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 체육과	1

(2015. 1. 27)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은 모]

[검토보고]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마포구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5년 1월 12일(월)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회부일자 : 2015년 1월 16일(금)

4. 관련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5. 제출이유

○ 동 조례안은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 활동 장려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생활체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청소년·학교·직장 생활체육에 대한 육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투명한 예산집행과 건전한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6. 주요내용

가. 장애인·유아·청소년·노인의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안 제3조제2항제7호)

나. 학교·직장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안 제3조제2항제8호)

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도·감독 규정 신설(안 제4조)

-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마포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직장체육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민의 생활체육 대상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인 장애인·유아·청소년·노인을 추가하였고, 학교·직장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또한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권고사항(2008.12월)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집행 사항 보고, 감독상 필요한 지시사항, 시정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한 회계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의견으로는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에 저촉됨이 없고, 최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지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근거 마련과 투명한 회계 관리시스템 및 지도·감독 규정 등을 마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방안은 시행시기가 늦었지만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시행함은 마땅

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동 조례안은 2014. 11. 13. ~ 12.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명 등 각종 용어를 한글맞춤법의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상 용어를 정비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만, 지방보조금의 지급대상, 경비의 지원, 지도·감독 등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적용하되, 향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시행되면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야 할 것임.

관 계 근 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15.1.1.] [법률 제12856호, 2014.12.23., 일부개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과-473(2008.12.24)]

▣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1. 회계관리시스템 및 지도·감독 규정 마련
2. 생활체육사업 계획 및 성과평가의 효율성 제고
3.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관리의 투명성 제고
4. 생활체육협의회의 지원근거 마련 및 독립성 제고

참 고 자 료

▣ 마포구 생활체육 연합회 현황

○ 가입종목 : 축구 등 30종목 / ○ 클럽 및 동호인수 : 298개클럽 10,922명

연번	종 목	클럽수	회원수	회 장	사 무 장	비고
1	축 구	18	1,600명	문 자 현	강 신 조	
2	테 니 스	21	670명	유 천 길	김 광 수	
3	배드민턴	15	1,600명	복 정 화	조 은 진	
4	게이트볼	9	90명	이 영 숙	손 정 숙	
5	탁 구	9	900명	정 해 원	윤 호	
6	볼 링	10	90명	임 용 호	백 재 성	
7	댄스스포츠	5	100명	박 상 길	윤 성 빈	
8	족 구	13	300명	최 정 락	최 인 창	
9	생활체조	16	550명	홍 금 순	김 재 숙	
10	태 권 도	30	1,000명	송 관 현	김 상 기	
11	배 구	4	100명	윤 충 현	정 봉 진	
12	정 구	5	60명	오 대 근	성 문 기	
13	농 구	12	400명	김 정 근	장 재 우	
14	윈드서핑	3	60명	박 태 순	진 도 성	
15	검 도	10	300명	김 윤 석	소 재 우	
16	낚 시	4	400명	강 만 수	김 동 배	
17	수 영	9	300명	김 진 오	장 미 진	
18	국학기공	9	300명	이 동 주	한 경 애	
19	야 구	20	300명	김 연 근	김 종 선	
20	자 전 거	9	100명	차 경 만	김 미 정	
21	줄 넘 기	7	130명	한 광 욱	허 영	
22	풋 살	8	150명	김 영 우	이 상 원	
23	스 키	3	60명	박 희 진	이 종 식	
24	등 산	20	500명	김 광 규	김 종 선	
25	무에타이(킥복싱)	5	130명	배 민 훈	김 재 근	
26	이종격투기	6	100명	강 연 우	최 정 옥	
27	치어리딩	6	87명	장 용 훈	이 미 희	
28	유소년생활체육진흥회	3	121명	정 우 재	김 동 현	
29	복 싱	3	150명	이 상 호	윤 세 삼	
30	당 구	6	274명	김 동 건	주 재 동	
	생활체육회	**298**	**10,922**	**김 희 태**	**김 종 현**	